

HRD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5.03.1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HRD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대학의 교육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교직원의 직무역량 개발과 교육품질 향상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의 체계 수립 지원 업무
2.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의 체계 수립 지원 업무
3. 업적평가 시스템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4. 대학 행정 프로세스 혁신 업무 지원 업무

제3조(조직) ① 본 센터는 연구와 자문을 위해 센터장과 소속교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 소속 직원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타)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수행한다.

1. 교직원 직무역량 개발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업무를 협동하여 수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